

광주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5133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가연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10. 22.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20.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강 진등기소 2020. 5. 22. 접수 제564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12402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6.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소외 회사에게 84,064,639원 및 그 중 22,185,641원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4. 5.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8. 12. 27.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그 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2021. 4. 1.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93,557,399원(=원금 22,185,641원 + 지연이자 등 71,371,758원)이다.

다. 한편 B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22. 친척인 피고 명의로 같은 달 1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을 초과한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법원행정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1억 원이 넘는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사해의사가 없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목 록

전라남도 강진군 대 839㎡

